

2023년 1월 어린이집 현장평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준수사항 및 평가 기준 안내

(2022. 12. 23. 한국보육진흥원)

안녕하세요?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.

현장평가 시 준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어린이집 방역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
□ 대상: 2023년 1월 현장평가 대상 어린이집

□ 현장평가 시 준수사항

○ 현장평가 시작 전

- 어린이집에 코로나19 확진 관련 상황이나 자가격리 대상인 교직원과 원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 평가 진행 중에도 교직원과 원아가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, 즉시 현장평가자에게 알려주세요.

※ **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**

- 현장평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면 발열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.

※ **현장평가자는 어린이집 방문 전,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합니다.**

- 영유아가 현원의 2/3 이상 출석해야 하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출석 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, 한국보육진흥원과 협의 후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○ 현장평가 진행 중

- 현장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평가자 및 보육교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, 악수 등의 신체접촉을 피합니다. 면담은 1미터 이상의 좌석 간격을 두고 진행됩니다.

- 관찰 시, 교직원 및 영유아와 최대한 간격을 두고 진행됩니다.

※ **상황에 따라 보육실에 입실하지 않고, 보육실 입구에서 관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**

-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경우, 현장평가 당일에도 바깥놀이를 실내 대체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Ⅰ 평가 기준

○ 적용 지표: **2022년 어린이집 평가매뉴얼**

○ 현장평가 시 문서(기록) 검토 기간

■ (보육일지) 2022년 **12월**부터 현장평가 전일까지 확인

■ (그 외 기록*) 2022년 **10월**부터 확인

* **보육계획안(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), 영유아 관찰기록, 급간식 계획 및 제공기록 등**

■ (1년 단위 확인 문서) **2022년 1월**부터 확인

Ⅱ 세부 지표별 평정기준

○ 현장평가 시 지표별 평정기준

- (1-2-4-① 바깥놀이) 실내 놀이로 대체 가능

- (2-3-4-② 부모오리엔테이션) 서면자료 제공으로 대체 가능

- (2-4-1-③ 부모교육) 집단모임 이외 지면, 온라인 매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

- (2-4-2-② 부모개별면담) 유선으로 진행 후 기록 가능

- (2-4-3-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) 실시하지 않더라도 감안하여 평정

- (3-1-1-④ 실내 환기) 코로나-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감안하여 평정

- (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관련*) 원내 자체교육,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

* (3-3-3-② 건강 및 영양교육, 3-5-2-① 안전교육 및 영유아 학대예방교육, 4-4-1-② 보육교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)

- (3-3-1-③ 영유아의 이닦기) 코로나-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치질을 하지 않거나, 가글, 행굼 등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 가정통신문 등 관련 기록 구비 시 이닦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안하여 평정

- (3-5-1-② 소방대피훈련) 월 1회 이상 실시 여부 확인

※ 다만, 감염병 확산 우려로 실내 대피 훈련으로 대체하여 실시한 경우 감안하여 평정

- (3-5-2-③ 응급처치(심폐소생술) 관련 교육) 감염병 확산으로 외부 집합교육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'22년 평가 시에는 '20년-'22년까지의 이수증을 모두 인정하여 평정